제 11 장 환경위생

제1절.. 환경보전

제2절.. 수질관리

제3절.. 식품위생 관리

제4절.. 공중위생 관리

제1절 환경보전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며,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금정산과 범어사, 회동수원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온천천과 수영천이 흐르는 좋은 자연적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구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도시로의 발전가능성이 어느 곳보다 풍부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것이다.

1. 자연생태 관리

가. 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 활동

2005. 1. 19. 시민, 기업, 행정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0명으로 초록삶터금정 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의제21 추진 목표인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도시(ECO-Polis)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4백만원의 사업비로 『새파란 금정』 우리고유의 민물고기 전시회와 제14회 금정예술제 기간에 국내・외 희귀곤충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나. 새파란(SEFALAN) 금정 조성 추진

새파란(SEFALAN)금정 조성은 보고(Seeing), 체험하며(Experience), 느끼고 (Feeling), 감탄하는(Admiration), 4계절 청정지역 금정(the LAND of purity)이란 뜻으로 금정산, 범어사, 회동수원지, 수영천, 온천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구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으로 가꾸고 보존하기 위하여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호랑나비 생태거리 조성

O 목적: 두구동 수영강변 호랑나비 집단 서식 환경 조성

○ 위치 : 선두구동 홍법사진입로 및 맞은편 제방(L=1.35km)

O 내용 : 탱자나무10,000본, 자귀나무750본

□ 호랑나비 키우기 체험학습

O 기 간: 2010. 6. 3. ~ 6. 20.(18일간)

O 참 여: 청룡초등학교 학생 170명 및 유치원생 등 250여명

○ 내 용 : 호랑나비 애벌레 ⇒ 번데기 ⇒ 어른벌레 과정 키우기

□ 「내가 키운 호랑나비 날려 보내기」 행사 개최

O 일 시: 2010. 6. 21.(월) 11:00

O 장 소: 두구동 호랑나비 거리(홍법사 경내)

O 참 여: 900여명(초등학교 2, 유치원 8개소 등)

O 내 용:나비 성충 500마리 방사(국제신문, 중앙일보 등 언론사 보도)

O 예 산 : 6,812천원(구비)

2.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

우리 구는 금사공단에 대다수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공장, 자동차정비업체, 운수업체, 세차장, 병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관계가 있다.

〈 동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 업체수 | 총 계 | | 배 출 | 시 설 | ₫ | 기타수질 | 휘 발성 |
|---------|-----|-----|-----|-----|-----|----|------|------|
| T 正 | ᆸ제ㅜ | 중 계 | 소계 | 대기 | 수질 | 소음 | 오염원 | 유기물질 |
| 총 계 | 325 | 440 | 278 | 86 | 118 | 74 | 126 | 36 |
| 금사동 | 92 | 152 | 124 | 46 | 37 | 41 | 24 | 4 |
| 부곡동 | 53 | 61 | 22 | 7 | 15 | 0 | 29 | 10 |
| 장전동 | 30 | 33 | 11 | 2 | 9 | 0 | 20 | 2 |
| 선두구동 | 3 | 6 | 4 | 1 | 2 | 1 | 2 | 0 |
| 청룡노포동 | 12 | 12 | 6 | 1 | 5 | 0 | 3 | 3 |
| 남산동 | 34 | 39 | 17 | 0 | 17 | 0 | 14 | 8 |
| 구서동 | 44 | 47 | 18 | 3 | 13 | 2 | 23 | 6 |
| 서동 | 18 | 21 | 9 | 2 | 7 | 0 | 10 | 2 |
| 회동동 | 39 | 69 | 67 | 24 | 13 | 30 | 1 | 1 |
| 금성동 | 0 | 0 | 0 | 0 | 0 | 0 | 0 | 0 |

3. 환경오염의 원인과 오염도

가. 대 기

지형적으로 배산 임해 지역인 부산은 대기의 흐름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북쪽에 위치한 우리 구는 금정산을 배경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해변을 접한 타구에 비하여 대기의 정체가 많은 편이며, 대기오염의 원인으로는 자동차의 운행 시발산되는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매연 등 미세먼지와 공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SO₂) 등과 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리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오존(O₃)의 경우 차량의 운행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산하는 질소산화물(NOx)과 주유소, 세탁소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등이 기온이 높고 바람이 없을 때 태양광선과 광화학작용을 일으켜 생성 되고 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도 기존의 부곡동과 새로이 설치한 측정소(청룡동 주민센터 옥상, 2007. 3월부터 측정)의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기준 | | SO ₂ | | | O ₃ | | | CO | | | NO ₂ | | F | PM10 |) | 산성우 |
|------|-----------------|-----------------|------------|-------|-----------------------------|-------|-----|-----------------|-----|-----------------|-----------------|-------------|----|------|----|-----|
| 년도 | 0.02 (ppm/년) | | <u>쿠</u>) | (ppi | 0.06 (ppm/8시간) (ppm/8시간) | | 간) | 0.05 (ppm/년) | | 70 (µg/m³/년) | | 5.6 (pH) | | | | |
| | 부 | 부 | 청 | 부 | 부 | 청 | 부 | 부 | 청 | 부 | 부 | 청 | 부 | 부 | 청 | |
| | 산 | 곡 | 룡 | 산 | 곡 | 룡 | 산 | 곡 | 룡 | 산 | 곡 | 룡 | 산 | 곡 | 룡 | 부산시 |
| | 시 | 동 | 넁 | 시 | 동 | 동 | 시 | 동 | 동 | 시 | 동 | 동 | 시 | 동 | 넁 | |
| 2007 | 0.005 | 0.004 | 0.005 | 0.024 | 0.022 | 0.024 | 0.4 | 0.6 | 0.4 | 0.022 | 0.012 | 0.021 | 57 | 56 | 60 | 4.6 |
| 2008 | 0.006 | 0.004 | 0.004 | 0.026 | 0.024 | 0.029 | 0.4 | 0.5 | 0.5 | 0.022 | 0.023 | 0.022 | 51 | 50 | 64 | 4.6 |
| 2009 | 0.006 | 0.004 | 0.004 | 0.025 | 0.028 | 0.026 | 0.4 | 0.5 | 0.5 | 0.022 | 0.021 | 0.023 | 51 | 49 | 50 | 4.6 |
| 2010 | 0.006 | 0.006 | | 0.026 | 0.019 | 0.017 | 0.4 | 0.7 | | 0.021 | 0.032 | 0.025 | 49 | 51 | 48 | 4.8 |

〈 부산 및 우리구의 대기 오염도 〉

나. 수 질

하천 오염원은 가정 ·사무실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 및 정화조 오수와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로 대별되며, 우리 구의 경우 오염된 물은 대부분 하수 차집 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되고 있다.

[※] 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동측정망 년평균

금정산을 발원으로 하는 온천천은 유지수 부족으로 인한 건천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낙동강 원수를 유입(2~3만㎡/일)하여 하천 기능을 향상하였으며, 회동수원지의 상 ·하류에 흐르는 수영강은 작은 물고기가 노닐며 나비가 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보고 즐기도록 다각도의 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어 보다 나은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하천 오염도 〉

(단위 : mg/ℓ)

| 구 분 | 200 |)7년 | 200 | 8년 | 200 |)9년 | 201 | 0년 |
|----------------------|-----|-----|-----|-----|-----|-----|------|------|
| T E | BOD | COD | BOD | COD | BOD | COD | BOD | COD |
| 온 천 천 (태광산업 앞) | 2.9 | 5.4 | 3.8 | 6.6 | 3.2 | 6.5 | 2.49 | 4.77 |
| 수 영 강 상류 (선동 신천교) | 1.4 | 3.7 | 1.5 | 3.8 | 2.1 | 5.1 | 1.4 | 4.3 |
| 수 영 강 (금사동 동천교) | 7.6 | 9.1 | 7.0 | 8.7 | 3.6 | 8.6 | 5.52 | 8.46 |

※ 부산시 물환경정보 수질측정망 년 평균 자료 임.

※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다. 토 양

석유류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 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경과 년 수에 따라 1~2년 주기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부터 누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환경부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시 오염 토양을 복원토록 하고 있다.

〈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현황 〉

| 계 | 석유류판매 | 산업시설 | 운수시설 | 공공기관 | 주거시설 | 기타 |
|-------|-------|------|------|------|------|----|
| 64 | 48 | 6 | 4 | 2 | 1 | 3 |

라. 소음ㆍ진동 및 기타

자동차 운행음과 경적음, 공장에서의 발생소음·건설공사장에서의 작업소음 및 진동, 확성기소리 등 생활소음이 주를 이루며, 산업의 다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르는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 등이 상치되어 소음·진동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장에서의 소음관리와 건설공사장의 소음저감을 위한 방법 개발 및 신기술 도입 등 소음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추진과 관리로 정온 유지를 위해 노력을 가일층 경주하고 있다.

4. 환경오염 개선 추진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배출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생산 공정의 개선, 방지시설의 효율성 증대, 신기술 전파 등 기술 지원 및 오염예방 지도를 하고 있으며 불법배출이나 방지시설의 미가동 등 위 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실 시하고 있다.

〈 201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및 조치내용 〉

| 구분 | 점검 | 점검 | 위반 | | | 위 빈 | 조 치 | 내 역(| (건) | | |
|-------|-----|-----|----|----|------------|----------|----------|----------|----------|----|----|
| 종류 | 대상 | 업체 | 건수 | 계 | 고발 (병과) | 조업 정지 | 폐쇄 명령 | 사용 금지 | 개선 명령 | 경고 | 기타 |
| 계 | 278 | 173 | 13 | 13 | _ | - | _ | _ | 3 | 10 | |
| 대 기 | 86 | 54 | 5 | 5 | _ | _ | _ | _ | 2 | 3 | |
| 수 질 | 118 | 71 | 5 | 5 | _ | _ | _ | _ | 1 | 4 | |
| 소음・진동 | 74 | 48 | 3 | 3 | _ | 1 | _ | - | _ | 3 | |

〈 배출부과금 부과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 7: | 1 | 기 본 부 | 후 과 금 | 가 금 초과 배출부과 | | |
|-------|-----|------|-------|-------|-------------|------|--|
| 년도별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 2009년 | 7 | 0.33 | 7 | 0.33 | _ | _ | |
| 2010년 | 12 | 1.53 | 11 | 0.52 | 1 | 1.01 | |

나. 운행차 배출가스의 규제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5년 7월1일부터 자동차가 실제 운행하는 상태를 재현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을 연중 실시 및 월 1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하여 운전자의 자율적인 배출가스 관리를

유도하고, 제한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홍 보·계도 및 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내역 〉

| | | 구 | 분 | 2011단속 | 2010단속 | 점검 | 위반 | | 위 반 | 조 치 니 | 내 역(건) |
|----|----------------|---|-----|--------|--------|-----|----------|----------|---------------------------------------|-------------|-------------|
| 종 | 류 | ' | _ | 목표(대) | 목표(대) | 대수 | 대수 | 개선 명령 | 사용정지 | 매 연 측정지시 | 과태료 (만원) |
| | フ : | # | | 5,400 | 11,200 | 431 | _ | - | _ | - | <u> </u> |
| 기 | 기 | 단 | 속 | 200 | 200 | 140 | _ | _ | - | _ | _ |
| 비디 | 기오 | 딘 | · | _ | _ | _ | _ | _ | - | - | - |
| 육 | 안 | 감 | 시 | 5,000 | 10,000 | 180 | _ | _ | - | _ | _ |
| 소 | 음 | 단 | 속 | 200 | 1,000 | 111 | ı | _ | - | | - |
| | | | | 2011계획 | 2010실적 | 기준 | 초과 | | 조 | 치 니 | 용 |
| | 자동차 | | (대) | (대) | (디 | H) | 는 청 자 | 당정비 | 저미 | 비공장 유도 | |
| 1 | 무료점검 | | 500 | 070 | | | 연경 | | ~ ~ ~ ~ ~ ~ ~ ~ ~ ~ ~ ~ ~ ~ ~ ~ ~ ~ ~ | 100 TI | |
| | 1 | | 500 | 270 | _ | | _ | | _ | | |

다.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

각종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날림)먼지의 억제와 소음 저감을 위하여 세륜시설 및 방진(방음)시설의 설치, 살수 등 기술적인 저감계획을 검토·지도하고 상황에 적절한 저감방법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주민보호 및 환경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행정을 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산먼지사업장 점검내역 〉

| 구분 | 대 산 | 전 건 | 위 반 | | | | 조 : | جًا L | 내 역 | | |
|---------|------------|------------|-----|---|----------|----------|----------|-------|-------------|------------|----|
| 연도별 | 대 상 사업장 | 점 검 횟 수 | 사업장 | 계 | 사용 금지 | 개선 명령 | 조치 명령 | 경고 | 과태료 (만원) | 고발 (병과) | 기타 |
| 2010 실적 | 76 | 122 | 9 | 9 | - | _ | _ | 9 | 620 | _ | |
| 2011 계획 | 42 | | | | | | | | | | |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1991. 12. 3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공포되어 시설물은 1993년, 자동차는 1994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며,

부담금 산정방법은 시설물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하며 자동차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3월, 9월)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미수납분에 대해 연 2회 (5월, 11월) 독촉고지 및 압류 촉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단위 : 천원)

| 그저그 | | 부 과 | | 징수율 | |
|---------|--------|-----------|--------|-----------|-------|
| 금정구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3 丁 查 |
| 계 | 59,355 | 3,915,594 | 49,490 | 3,335,318 | 85.2 |
| 시설물 | 6,074 | 722,210 | 5,654 | 692,410 | 95.9 |
| 자동차 | 53,281 | 3,193,384 | 43,836 | 2,642,908 | 82.8 |

제2절 수질관리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및 지하수 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관리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과 생활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질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1.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금성동 등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 부적합 시설의 경우에는 음용금지를 통보하고 물탱크 청소 및 소독약 적정투입 등 개선조치토록 하였으며, 부득이 음용 시 반드시 끓인 후 사용토록 홍보하였다.

〈 2010년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

| 지정 | 시설명 | 소재지 | | 수질검사 | 결과(적・부) | |
|----|---------|-------------|-------|-------|---------|-------|
| 번호 | 시결정 | 고세시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적 합 | | 12 | 12 | 12 | 12 |
| 계 | 부적합 | | _ | _ | _ | _ |
| | 부적합율(%) | | 0.0 | 0.0 | 8.3 | 16.6 |
| 1 | 장전1 | 장전1동 384-45 | 적합 | 적합 | 적합 | 적 합 |
| 2 | 대 룡 | 노포동 598 | 적합 | 적 합 | 적합 | 적 합 |
| 3 | 녹 동 | 노포동 산38 | 적합 | 적합 | 적합 | 부적합 |
| 4 | 작 장 | 노포동 763 | 적합 | 적합 | 적합 | 부적합 |
| 5 | 신 암 | 남산동 179-3 | 적합 | 적합 | 적합 | 적 합 |
| 6 | 남 산 | 남산동 672 | 적합 | 적합 | 적합 | 적 합 |
| 7 | 남 중 | 남산동 20-2 | 적합 | 적합 | 적합 | 적 합 |
| 8 | 금성동 1통 | 금성동산25-1 | 적합 | 적합 | 적합 | 적 합 |
| 9 | 금성동 2통 | 금성동 528 | 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 10 | 금성동 3통 | 금성동 860-1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 11 | 오 륜 | 오륜동 669-21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 12 | 동 대 | 회동동 115 | 적합 | 적합 | 적합 | 적 합 |

2. 지하수 관리

가. 지하수 신고 절차 및 종류

지하수 개발 시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지하수 개발 시 ▷ 이용신고 또는 허가 신청
- O 지하수 용도·명의·시설내역 변경 시 ▷ 변경신고
- 지하수 고갈, 수질 부적합 등에 따른 사용 종료 시 ▷ 종료신고

나.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지하수는 용도별로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도별 주기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음용수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
| 주 기 | 2년에 1회 | 3년에 1회 | 3년에 1회 | 3년에 1회 |

다. 2010 지하수 신고, 허가, 변경, 종료 처리 현황

| 이용신고 | 허가신청 | 변경신고 | 준공신고 | 종료신고 |
|------|------|------|------|------|
| 18 건 | _ | 5 건 | 16 건 | 24 건 |

라. 지하수 현황

(2010.12.31.기준)

| 구분 | 계 | 생활 | 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
|------------|---------|---------|-----|---------|------|--|
| 丁 世 | 21 | 음용 | 비음용 | 5 j 8 T | | |
| 계 | 1,313 | 306 | 802 | 19 | 70 | |
| 허가시설 | 66 | 11 | 48 | 6 | - | |
| 신고시설 | 1,247 | 295 754 | | 13 | 70 | |

3.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금정산과 윤산에 소재하는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17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내 안내판에 수질검사 결과를 부착하고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안내문 게시 및 반드시 끓인 후 음용토록 홍보하였다.

〈 2010년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

| 지 | | | | | 수질검시 | · 결과(적 • 부 | 루) | |
|------------------|-----------------|------------|---------|----------|------|------------|------|----------|
| · 정 번 호 | 시설명 | 소재지 | 1/4 년 기 | 0/4 년 71 | | 3/4분기 | | a/a ⊟ ¬I |
| 호 | | | 1/4분기 | 2/4분기 | 7월 | 8월 | 9월 | 4/4분기 |
| | 적 합 | | 12 | 17 | 4 | 5 | 3 | 8 |
| 계 | 부적합 | | 5 | - | 13 | 12 | 14 | 9 |
| | 부적합 율 (%) | | 29.4 | 0.0 | 76.4 | 70.5 | 82.3 | 52.9 |
| 1 | 수박골 | 금성동 산69 | 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적 합 |
| 2 | 삼밭골 | 장전2동 산30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 3 | 호국사 2 | 장전2동 산30 | 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 4 | 보광암 | 장전2동 산29-4 | 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 5 | 금정 | 장전2동 산29-4 | 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 6 | 참샘골 | 구서1동 산178 | 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 7 | 정암 | 구서2동 산4-1 | 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 8 | 물망골 2 | 구서2동 산4-8 | 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 9 | 용머리 | 구서2동 산4-8 | 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적 합 |
| 10 | 물망골 1 | 구서2동 산4-8 | 부적합 | 적 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 11 | 제일 | 서3동 산1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적 합 |
| 12 | 서곡 | 서3동 산103 | 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적 합 |
| 13 | 서천 | 금사동 544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 14 | 회동 | 금사동 산111 | 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 15 | 여명 | 금사동 산9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 합 | 적 합 | 적 합 |
| 16 | 윤산 | 부곡동 산15-17 | 적합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적 합 |
| 17 | 금양 | 부곡2동 산30-1 | 부적합 | 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적합 |

4. 하수도 사용료 징수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수질개선을 기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하수도사용료의 납기내 수납액은 11,316백만원(징수율 96.8%)이며 체납액 징수금액은 151백만원(징수율 38.4%)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려 및 즉시 압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 2010년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업종별 구분 | 계 | 가정용 | 영업 | 욕탕1 | 욕탕2 | 공공 | 산업 | 공 사 부담금 |
|-----------|--------|-------|-------|-------|-----|-------|-------|------------|
| 징수결정액 | 11,695 | 3,827 | 3,780 | 508 | 0 | 665 | 442 | 2,473 |
| 수 납 액 | 11,316 | 3,779 | 3,499 | 463 | 0 | 660 | 442 | 2,473 |
| 징수비율 | 96.8% | 98.8% | 92.5% | 91.2% | 0 | 99.2% | 99.9% | 100% |

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우리시의 식수원이며 유일한 비상상수원인 회동수원지의 수질보전을 위해 선두구동, 노포동, 오륜동, 청룡동 일부 및 회동동 일부 지역 27.58k㎡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수시설이 정비된 마을 주변은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0.82k㎡ 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상수원의 수질개선은 물론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53백만원이국시비 보조금으로 배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 2010년 상수도주민지원사업 시행현황 >

| 연 번 | 사업 유형 | 사 업 명 | 사업위치 (지원대상) | 사업량 | 사업비 (천원) | 집행 방식 | 사업기간 |
|--------|----------------|------------------------------|----------------|---------------------|-------------|---|------------------------|
| | | 계(6개사 | 겁) | | 253,372 | | |
| 1 | 소득 증진 사업 |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추가공사 | 두구동 1421-12 | 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 | 34,518 | 시설비(공사) | '11.02~06. |
| 2 | | 선두구동 마을회관 개량공사 | 두구동 890-3 | 연면적 148.6㎡ | 78,214 | 시설비(공사) | '11.02~06. |
| 3 | | 선동 신천마을 급수배관공사 | 선동 신천마을 | 신규급수관 L=335m | 18,084 | 시설비(공사) | '11.02~06. |
| 4 | 복지 증진 사업 | 오륜동 수세식화장실 개량 | 오륜동 일원 | 대상가구 40가구 | 95,083 | 시설비(보상) | '11.02 [~] 12 |
| 5 | | 오륜동 농로보수 및 상습침수도로 높임공사 | 오륜동 일원 | 오륜동 산 106-3일원 | 25,473 | 시설비(공사) | '11.02~06. |
| 6 | | 노포동 상수도 설치 | 노포동 689 외 1 | 2가구 상수도 인입 | 2,000 | 시설비(공사) 상수도사업 본부 금정사업소 공사대행 | '11.02~06. |

제3절 식품위생 관리

범어사 주변, 산성마을 등에 형성되어 있는 먹거리촌은 맛있고 건강한 웰빙 식단 뿐 아니라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특산품인 흑염소불고기와 산성 토산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죽전마을 부근에 『금성 산성마을 먹거리 홍보탑』을 설치하여 우리 구의 역사와 맛을 널리 알리고 있다.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금정산, 범어사 등의 관광과 더불어 전통과 품위와 멋이 어우러진 먹을거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 에게 우리 지역의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중 「미소가 있는 음식점」을 선정·지원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소득증대·핵가족화·맞벌이 가정의 증가추세에 따른 외식문화 발달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가 우선 요망되고 있어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 제작, 위생용품 지원, 알뜰하고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 구 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다.

1. 식품위생업소 현황

2010년말 현재 우리구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소 3,816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가 1,864개소이며, 업종별 업소 수는 다음과 같다.

〈 식 품 접 객 업 소 〉

| 업종별 | 계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위탁급식영업 |
|-----|-------|------|------|-------|-------|-----|--------|
| 업소수 | 3,816 | 88 | 181 | 3,114 | 331 | 75 | 27 |

〈 식품제조・가공업소 〉

| 업종별 | 업소수 | 업종별 | 업소수 | 업종별 | 업소수 |
|----------|-----|-------|-----|-----------|-----|
| 계 | 471 | 식용유지류 | 3 | 조미식품 | 8 |
| 과자류 | 5 | 커피 | 3 | 김치류 | 3 |
| 빵 또는 떡류 | 14 | 음료류 | 1 | 절임식품 | 5 |
| 식육, 알가공품 | 2 | 다류 | 2 | 조림식품 | 2 |
| 어육가공품 | 1 | 장류 | 2 | 기타식품류 | 15 |
| 두부류, 묵류 | 1 | 면 류 | 4 |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6 |
| 즉석판매제조가공 | 394 | | | | |

〈 식 품 판 매 업 〉

| 업종별 | 계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소분업 | 기타 |
|-----|-----|---------|---------|---------|-------|----|
| 업소수 | 875 | 4 | 758 | 13 | 46 | 54 |

2.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진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분야부산광역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역특성 을 살린 먹거리 홍보탑을 설치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 지하고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왔다.

〈 식품진흥기금 활용 추진사업 〉

| 연번 | 추 진 내 용 | 수량 | 금액(천원) | 배 부 처 |
|----|------------------------|-------------------------|---------|---------|
| 1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4건 | 115,000 | |
| 2 | 남은 음식 재시용 금지 버스 음성광고 | 2010.4~ 2010.11 월 | 4,750 | 4개 노선버스 |
| 3 | 범어사 상마마을 먹거리 안내판 제작 | 17 | 17,105 | |

| 연번 | 추 진 내 용 | 수량 | 금액(천원) | 배 부 처 |
|----|--------------------------------------|--------|--------|--------------------|
| 4 | 집단급식소 위생소 지원 | 192개 | 704 |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 |
| 5 | 식중독 예방홍보 파일홀더 배부 | 2,000매 | 1,430 | 식품접객업소 2,000개소 |
| 6 | 잔반수거통 지원 | 880개 | 8,712 | 모범음식점 101개소 |
| 7 | 모범음식점 표지판 배부 | 21개 | 2,310 | 신규 지정업소 교체 21개소 |
| 8 |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항균손소독제 지원 | 192개 | 1,689 | 집단급식소 140개소 |
| 9 | 미소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앞치마, 위생모, 항균도마, 칼) | 307# | 2,079 | 미소음식점 15개소 |
| 10 | 남은음식 재사용금지시범업소지원 (잔반수거통, 복합찬기) | 150개 | 2,915 | 구청 주변음식점 20개소 |
| 11 |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 | 5,000매 | 3,250 | |
| 12 | 모범음식점 복합찬기 지원 | 430개 | 16,296 | 모범음식점 86개소 |
| 13 | 단란주점 소변기 탈취제 지원 | 172개 | 1,986 | 단란주점 86개소 |
| 14 |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오염도 조사 | 119개소 | 19,140 | 지하수 사용 식점119개소 |

3.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향한 식품안전관리

도시화·산업화·환경오염 등으로 식품의 원재료 및 가공식품이 유해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잦은 식중독 사고로 소비자들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위생관리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배부하여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지도 점검하여 영업자와 종사자의 결여된 위생의식을 고취시키고,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다.

〈 식중독 예방 활동 〉

| 활 동 내 역 | 점 검 업소수 | 비 고 |
|--------------------------|------------|--------------------------|
|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 739개소 | 미생물수거검사 378건 |
|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226개소 | |
| 김밥, 냉면육수, 햄버거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 259개소 | 김밥, 햄버거,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 11건 |
| 식중독 예방 홍보 | 4,000개소 | 식중독 예방 파일홀더 및 매뉴얼 제작 |
|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 | 232개소 | 손 세척 항균비누 및 살균소독제 |

4.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여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식품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품질관리 능력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식품위생 관리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식품판매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명절 성수식품 등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여름철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행락지 주변과 다중 이용시설의 식품판매업소를 단속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

〈위생감시실적〉

| - | | 감 시 | | 처분내역 | | | | | |
|---------|-------|-------|-----|----------|----------|----------|----------|-----|----|
| 구 분 | 업소수 | 업소수 | 위반수 | 허가 취소 | 영업 정지 | 개수 명령 | 시정 명령 | 과태료 | 고발 |
| 계 | 5,162 | 5,958 | 222 | 28 | 65 | 9 | 18 | 12 | 90 |
| 식품접객업 | 3,816 | 5,486 | 162 | 3 | 62 | 9 | 16 | 14 | 78 |
| 식품제조가공업 | 471 | 233 | 43 | 19 | 1 | • | 9 | 6 | 8 |
| 식품판매업 | 875 | 239 | 17 | 6 | 2 | • | 3 | 2 | 4 |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 〉

| | 감 시 | 위반업 | | 처분내역 | | | | |
|---------|-----|-----|------|------|------|-----|----|------|
| ㅜ 푼 | 업소수 | 소조치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과태료 | 고발 | 식품수거 |
| 부정·불량식품 | 472 | 60 | 25 | 3 | 12 | 8 | 12 | 689 |

제4절 공중위생 관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도하여, 영업질서를 확립 하고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1. 공중위생업소 관리

2010년 말 현재 우리 구 관내 공중위생업 전체 업소 수는 9개 업종 1,097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퇴폐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상습적인 불법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 공중위생업소 현황 〉

| 업 종 | 계 | 숙박업 | 목욕장업 | 미용업 | 이용업 | 세탁업 | 위생관리 용역업 | | 위생 용품 제 조 업 | 세척 제조업 |
|-----|-------|-----|------|-----|-----|-----|-------------|---|---------------------------|-----------|
| 업소수 | 1,097 | 120 | 77 | 538 | 145 | 171 | 40 | 4 | 1 | 1 |

〈 공중위생업소 단속 실적 〉

| 업소수 | 감 시 업소수 | 위반수 | 부적합 건수 | | | | | | |
|-------|------------|-----|--------------|------|------------|-----|----|--|--|
| | | | 영업정지. 과징금 | 면허정지 | 개선명령 경고 | 과징금 | 경고 | | |
| 1,097 | 1,121 | 30 | 4 | 1 | 11 | 5 | 9 | | |

2.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목욕장 77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욕수(원수, 욕조수) 수질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재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결과 〉

(단위: 개소/건)

| 업 소 수 | 수거검사 업 소 수 | 부 적 합 건 수 | | | | | |
|-------|---------------|-----------|-------|--------|--|--|--|
| 1 × T | | 계 | 원수부적합 | 욕조수부적합 | | | |
| 77 | 68 | 13 | 12 | 1 | | | |

3. 소외계층 이 · 미용 무료봉사

이용·미용업 지회 회원들과 우리구 소재한 복지시설, 무료급식소, 호스피스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연계시켜 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이 ·미용 무료 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1월부터 시작하여 관내 복지시설 등 8곳을 순회하며 봉사자 200여명이 참여하여 2,300여명에게 이웃사랑을 나누어 주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미용무료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나눌 계획이며 소외계층들에게는 작은 기쁨과희망을 주고 봉사자들에게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제공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금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